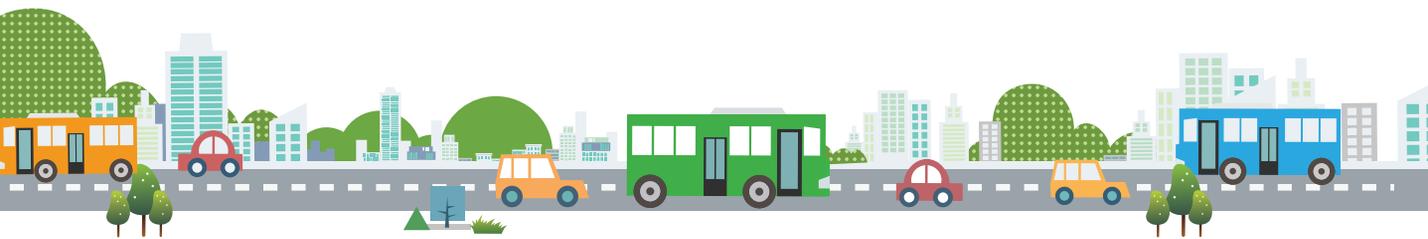


「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, 안전한 대중교통 실현」

버스운전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!
시민들은 보다 안전한 버스 이용!



국토교통부

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

모두가 잘 사는 상생발전

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, 안전한 대중교통 실현

버스운전자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! 시민들은 보다 안전한 버스 이용!



국토교통부

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

올해 7월부터 노선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됩니다



1 2018.7월 : 주 68시간 (평일 40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 + 휴일 16시간)

* 노선버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

2 2019.7월 : 주 52시간 (주7일 40시간 + 연장근로 12시간)

* 시행시기 : 300인 이상(2019.7.1), 50~300인 미만(2020.1.1), 5~50인 미만(2021.7.1)

기업 규모	업체 수(비율)	종사자 수(비율)	적용시기
50명 미만	86개(15.6%)	2,276명(1.9%)	2021.7.1
50~300명 미만	358개(65%)	55,058명(46%)	2020.1.1
300명 이상	78개(14.1%)	40,315명(33.7%)	2019.7.1
500명 이상	29개(5.3%)	22,042명(18.4%)	2019.7.1
합 계	551개	119,691명	

* 노선버스 : 시내버스, 시외(고속)버스, 마을버스, 농어촌버스 등

하루 17시간 이상의
장시간 운전하는
노선버스 운전종사자에게
근로여건을 개선하고
버스 이용의 안전을 확립



노동시간 단축에도 국민 불편이 없도록 노사정과 합의하였습니다



[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합의(5.31)]

- 1 2019.6월까지 근로형태를 유연·탄력적으로 운영하여 현 운송수준 유지
- 2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 및 운전자 신규 채용 적극 노력
- 3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'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'을 마련('18.12월)



시민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
노사정은 함께 선언문 이행에
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.



선업문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



1 유연근로시간 제도 적극 활용 지원

- 탄력근로제 : 특정 주의 노동시간 연장, 다른 주의 노동시간 단축
→ 일정기간의 평균 노동시간은 주중 40시간(연장근로 포함 시 주중 52시간)

예 시

+ 2주 이내 단위(주중)

(1주) 60시간 : 48시간 + 12시간

(2주) 44시간 : 32시간 + 12시간

+ 3월 이내 단위(주중)

최대 64시간 : 52시간 + 12시간

(3개월 평균 주 평균 52시간)

* 주 52시간 법정 시행일('19.7월) 전에는 휴일근로 최대 16시간 추가 가능

2 버스 운전자 일자리 구인·구직 매칭 강화

- 지자체별 운전자 양성사업, 군 운전 인력 등을 적극 활용하고, 고용부의 고용지원순회출장센터 등과도 연계하여 현장 중심의 신속한 일자리 매칭
- 운전자 구인·구직 통합정보시스템(lic.kotsa.or.kr/bus)을 워크넷(www.work.go.kr)과 연계하여 일자리정보 우선 노출



일하는 방식을 개선하는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



1 정부·지자체·노동관서 합동 일터 컨설팅 적극 지원

- 선언문 이행이 어려운 현장을 중심으로 지방관서 및 지자체와 연계하여 적극 지원

2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도입(~19년)

- 근무혁신(노동시간 단축, 교대제 개편 등) 실천기업에 인센티브 부여
* 세제지원, 컨설팅 우선 지원 등 행정·재정적 지원

3 유연 근무제 활성화 지원

- 간접노무비 지원 : 유연근무 활용 1인당 주 5~10만원 최대 1년간 지원
- 탄력근무제 적용 매뉴얼 등 제작, 배포



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, 운수종사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



[버스업계도 신규채용 지원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]

1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·개편

●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이란?

-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

구분	300인 이상 기업	300인 미만 기업
신규채용 지원 (채용 1인당)	월 40만원 ⇒ 60만원 까지 확대 (1~2년)	월 80만원 ⇒ 100만원 까지 확대 (1~3년)
임금보전 지원 (기존 재직자 1인당)	최대 40만원까지 지원 (1~3년)	





2 고용창출지원금 연계 지원

- 기업의 신규채용 시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금과 함께 다른 고용창출 지원금도 추가 (70%)로 받도록 연계

예시

- 청년추가고용장려금 : 중소·중견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경우, 연봉의 1/3수준(900만원)을 3년간 지원
 - 청년 1명 고용 시 **최대 7,690만원** 지원(3년간 합산 금액)
 - 일자리 함께하기 : **3,600만원**(1명×100만원×36개월)
 - 청년추가고용장려금 : **1,890만원**(900만원×1명×36개월×70%)
 - 고용증대세제 : **2,200만원**(1,100만원×1명×2년)
- * 청년고용증대세제 입법 추진 중이며, 도입 시 1인당 500만원 추가 감면

3 근로자의 퇴직급여 손실 방지

-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감소 시 퇴직급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책무 강화
 - ⇒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사전 통지
 - ⇒ 노동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
-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

